CR 2008 - 0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2008. 6.

이 태 열

보 험 연 구 원

CR 2008 - 02

CEO
Report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2008. 6.

이 태 열

보 험 연 구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Ⅰ. 검토배경 ··1

Ⅱ. 주요 이슈 논의 ··2

1.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 ··········2
2. 국내 비은행금융기관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사례 ·····9
3. 해외 보험산업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사례 ···············12
4.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계좌 ···15
5. 인터넷 뱅크와 지급결제업무 ··17

Ⅲ. 결 론 ··18

Ⅰ. 검토 배경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업무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융투자회사에 허용되는 수준**이 될 것임.

○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

○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이러한 결정이 보험회사에 one-stop 금융서비스 체제와 업권간 공정 경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음.

□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한다는 큰 원칙은 설정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유형과 효과 등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음.

□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도입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①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실익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② **우리나라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관련한 사례의 검토를 통해 보험산업의 참여 유형을 추론함.

③ **해외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국제 기준에서 볼 때 도입 가능한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방안을 검토함.

④ 국내외 사례를 기초로 하여 보험산업은 고객에게 **어떠한 형태로 지급결제용 계좌**를 제공해야하는지 제시함.

⑤ 마지막으로 **인터넷 뱅크**와 같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른 유형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이슈 논의

1.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

■ 보험산업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금융겸업화 시대에 종합금융서비스 체제**를 갖춤으로써 공정 경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 이유임.

■ **지급결제수수료의 절감 규모는 회사에 따라 가변적**일 뿐 아니라 인프라투자 및 금융결제원 가입비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려하여야 함.

가. 종합금융서비스 체제 구축

□ 보험회사가 지급결제기능을 확보할 경우 1회성 권유 및 판매 위주로 이루어지는 보험 마케팅 관행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고객 관리**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임.

○ 보험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면 보험료는 고객의 은행계좌에서 이체되고 보험금도 바로 고객의 은행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고객과의 접점이 부족**함.

- 보험회사가 증권사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경우에도 적립금의 이체 및 환급금의 지급이 모두 고객의 은행계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보험회사는 소외되는 것이 일반적임.

○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보험회사의 고객 계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이 과정에서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됨.

- 또한 공과금 납부, 자금 이체, 홈뱅킹 등 다양한 지급결제 기능을 기반으로 은행의 PB(private banking) 수준의 고객서비스가 가능함.

<그림 1> 지급결제 참여 전후의 보험산업 고객 관계

< 현 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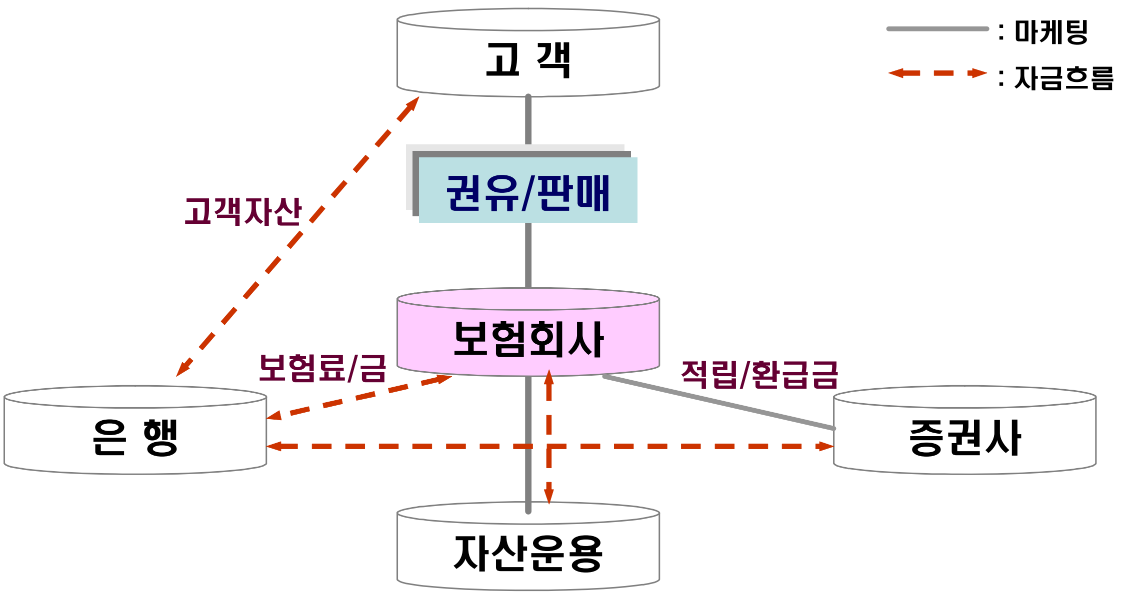

<참여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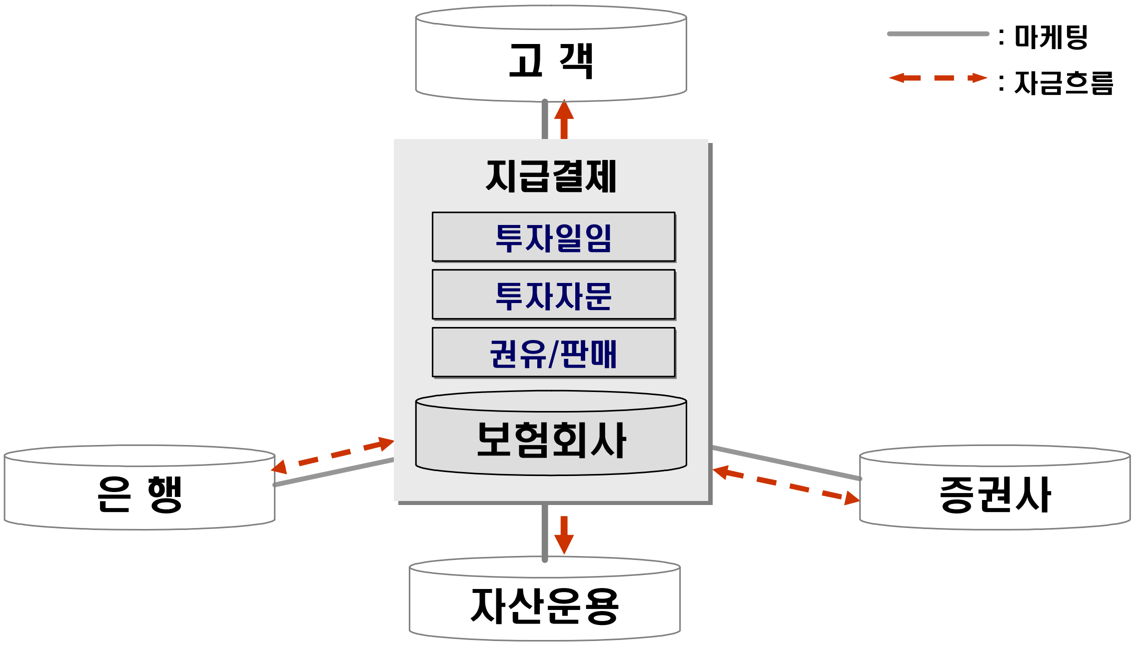

자료 : 이태열,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종합금융서비스", 보험연구원 제27회 보험경영인조찬회, 2007. 11

나. 업권간 공정경쟁여건 확보

□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산업 중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지 못한 산업은 보험산업이 유일**함.

○ 은행은 1910년 어음교환시스템 도입 이후부터 예금 계좌를 중심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해오고 있음.

○ 서민금융기관은 대표금융기관을 통해서 2001년 금융결제원의 특별참가기관 자격으로 참여하였으며 지로, CD, 타행환, 전자금융, CMS(Cash Management Service)[1] 등 5개망에 가입하였음.

○ 금융투자업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으로 법이 시행되는 2009년부터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의 참여가 허용됨.

□ 보험산업은 금융겸업화시대에 고유영역에서의 경쟁력만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하기 때문에 **타금융권에 비해 경영전략의 선택폭이 좁을** 수 밖에 없음.

<표 1> 금융기관별 소액결제시스템 참여 현황 비교

구분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참여방식	- 직접 참여 - 예금 계좌	- 대표금융기관 경유 간접 참여 - 예금 계좌	- 직접 참여 - 위탁 계좌	- 미참여 - 주거래 은행과 제휴를 통해 서비스 참여
참여년도	- 1910년 어음교환시스템 도입 이후	- 2001년 금융결제원 특별참가 승인	-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이후	-
이용 시스템 종류	- 총 11개 시스템 모두 이용가능	- 지로시스템, CD/ATM, 타행환, 전자금융, CMS 등 5개 공동망	- 지로시스템, CD/ATM, 타행환, 전자금융, CMS 등 5개 공동망	- CD/ATM, 타행환 전자금융, CMS 등 4개 공동망에 주거래은행을 통해 참여
비용부담	- 가입비 납부	- 특별참가금 5년 분납	- 가입비 납부	- 주거래은행에 다양한 수수료 지급

자료 : 이태열•조혜원 "보험산업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방안"(용역보고서),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6. 12

1) 대량자금이체 실시간 이체 다수은행 거래내역조회 및 통지 등을 시행하는 지급결제서비스로 주로 각종 요금의 정기적이 자동이체에 주로 활용됨.

다. 지급결제수수료 및 비용

□ 보험회사는 CMS이체와 R/T(real time)[2]이체 등을 위해 주거래은행, 고객계좌 보유은행, 금융결제원 등에 8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전체 은행수수료 중에는 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수행하는 CMS이체 비용이 대부분**(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R/T이체는 보험금지급, 초회보험료 납부, 약관 대출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음.

<표 2> 보험회사의 은행수수료 지급 추이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생보사	44,943	50,159	60,803	62,621	63,642	7.2%
손보사	10,385	11,241	15,416	17,032	17,510	11.0%
전 체	55,329	61,400	76,220	79,654	81,152	8.0%

주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를 통한 비공식 집계로서 지급결제수수료 구성의 복잡성으로 인해 공식적인 비용은 집계되지 못하고 있음.

□ 보험회사 지급결제 수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CMS의 경우 은행간 수수료, 고객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전송료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은행간 수수료** : 고객계좌 보유 은행이 보험료를 이체해주는 대가로 건당 140원의 수수료를 보험회사의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받음.

- 실제 수수료는 보험회사가 주거래 은행을 통해 지급하고 있음.

○ **고객수수료** : 주거래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기관으로서 보험료 집금서비스의 대가로 건당 약 20원의 수수료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음.

2) 자금의 1회성 실시간 이체를 위해서 사용되며 주로 비정기적인 거래에 활용됨.

- 보험회사가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가입할 경우 참여기관으로서 직접 집금을 하기 때문에 고객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 **중개수수료 및 전송료** : 금융결제원이 이체 및 정산 정보 제공의 대가로 건당 9원의 수수료를 거래의뢰은행으로부터 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회사가 대납하고 있음.

○ 금융결제원을 통한 CMS 대신 민간 VAN사를 통한 이체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은행 CMS와 유사한 개념과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음.

○ R/T 이체의 경우도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나 은행간 수수료가 크게 비싸며 은행마다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 지급결제 참여 후 비용 및 수익

지급결제참여 여부		미참여	참 여		
지급결제 유형		CMS입금	CMS입금		CMS출금
자금 이동		은행(고객계좌) ↓ 보험회사	타금융기관1) (고객계좌) ↓ 보험회사	보험회사 (고객계좌) ↓ 동보험회사	보험고객계좌 ↓ 타기관2)
수수료지급	은행간 수수료	보험회사 ↓ 은행(고객계좌)	보험회사 ↓ 타금융기관 (고객계좌)	없음	타기관 ↓ 보험회사
	고객 수수료	보험회사 ↓ 은행(주거래)	없음	없음	타기관 ↓ 타기관 주거래은행
	중개수수료 및 전송료	보험회사 ↓ 금융결제원	보험회사 ↓ 금융결제원	없음	타기관 ↓ 금융결제원

주 : 1) 고객의 계좌가 개설된 다양한 금융기관을 의미(은행, 타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
2) CMS이체로 요금을 받는 금융, 비금융 사업자를 포괄함.

□ 보험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CMS 보험료 이체와 관련된 여건의 변화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것임.

① 과거와 같이 **은행의 고객계좌(또는 고객계좌가 있는 타금**

융기관)로부터 보험료가 이체될 경우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기관인 보험회사는 **고객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 그러나 은행간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및 전송료는 여전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당 수수료 부담은 169원에서 149원으로 하락함.

② **보험회사에 개설된 고객의 계좌에서 보험료가 입금**될 경우 과거에 납부하였던 **3가지 수수료를 모두 납부할 필요가 없음.**

- 건당 169원에서 비용이 전액 절감됨.

③ 보험회사에 개설된 고객의 계좌에서 타금융기관 또는 기업(우유, 정수기, 신문 등)에 대한 **CMS이체가 발생할 경우 은행간 수수료를 수입으로** 취할 수 있음.

- 건당 140원의 수익이 발생

□ 지급결제수수료 절감 규모는 제한적인 반면, 금융결제원 가입비와 인프라 구축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임.

○ 지급결제수수료 절감은 보험료 이체를 얼마나 유치하고, 해당 계좌에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임.

○ 금융결제원 가입비는 기투자설비에 대한 부담금, 기존회원사의 투자 유발 부담 등이 고려되며 막대한 전산망 구축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재까지는 비예금수취기관이 가입한 사례가 없어 사실상 금융투자업 및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결제원 가입비 기준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CMS이체 수수료 절감 시뮬레이션

가정 1 : 전체 지급결제수수료 중 95%가 CMS 이체 수수료(R/T이체 수수료는 비중이 작아 본고에서 논의하지 않음.)

가정 2 : CMS 보험료 이체의 10%를 자사 계좌로 유치

가정 3 : 자사 계좌 중 절반(5%)에서 평균 3건의 CMS 이체 서비스 제공

참여 이전	CMS이체(95%) 770억원	RT거래 5% 41억원

참여 이후	① 77억원	② 82억원	③ 96억원	CMS이체 순비용 515억원	RT거래 5% 41억원

① CMS 보험료 납입건수의 10%가 유치된 계좌에서 발생하면서 은행간수수료, 고객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전송료 가 모두 면제되어 약 77억원(770억원의 10%)의 수수료를 절감

770억원 ×10% = 77억원

② 보험회사가 지급결제기관으로서 주거래 은행에 납부하는 고객수수료가 면제되어 약 693억원(770억의 90%)에서 82억원의 수수료 감소

770억원 ×90% ×20원 / 169원 = 82억원

③ 타기관 CMS 출금의 발생으로 보험회사 계좌(770억원의 5%)로부터 약 96억원의 집금 수익이 발생

770억원 ×5% ×3건 ×140원 / 169원 = 96억원

☞ 따라서 77억원 + 82억원 + 96억원 = 255억원의 절감 효과

☞ 전체 보험료 중 10%가 자사 계좌에서 이체되고 그 중 절반에서 평균 3건의 CMS 이체 서비스가 발생하여도 지급결제수수료의 순절감액은 약25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2. 국내 비은행금융기관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사례

■ 보험산업의 산업의 특성상 **금융투자업과 유사한 형태**로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금융결제원 직접 참여** : 은행, 금융투자업과 더불어 3대 금융산업으로서 개별 회사가 금융결제원에 특별참가기관으로 직접 가입하여 결제관련 정보를 교류하여야 함.

○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협회 성격의 중앙회 등을 대표금융기관으로 내세워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

□ **대행은행을 통한 차액결제** : 비은행 금융기관으로서 한국은행에서의 차액결제(정산)는 대행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은행만이 중앙은행에서의 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표 4> 우리나라 산업별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유형

구 분	예금수취기관		비예금수취기관	
	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금융결제원 참여	직접참여	대표금융기관	직접참여	직접참여
한국은행 결제자금정산	직접참여	대표금융기관 대행은행	대행은행	대행은행
지급결제용 자산	예금	예금	비예금유동성 (고객예탁금)	비예금유동성
리스크 관리 특징	한국은행 긴급지원	대표금융기관 (담보순채무한도)	지급결제자산의 전액 외부 예탁	금융투자업수준의 안정성 필요

자료 : 이태열, "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종합금융서비스", 보험연구원 제27회 보험경영인조찬회, 2007. 11

□ **비예금유동성 기반 서비스** : 비예금수취기관으로서 보험산업은 금융투자업과 같이 비예금유동성을 기반으로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함.

○ 은행,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수취기관인 만큼 요구불예금을 기반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할 수 있음

○ 금융투자업의 경우 비예금유동성인 고객예탁금을 기반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임.

□ 보험산업이 금융투자업의 유형으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할 경우 **송금정보는 금융결제원에 실시간으로 직접 전달하고 차액결제는 다음날 대행은행을 통해서 실시**하게 됨.

○ A보험회사 고객P가 B은행의 고객K에게 송금을 할 경우 우선 A보험회사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해당 정보를 B은행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하며 B은행은 즉시 해당금액을 고객 K에게 지급함.

○ 다음날 A보험회사는 대행은행에 결제차액을 송금하며 대행은행은 A보험회사를 대신해서 한국은행의 당좌계좌를 통해 B은행과 차액결제를 함으로써 지급결제업무가 종료됨.

<그림 2>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유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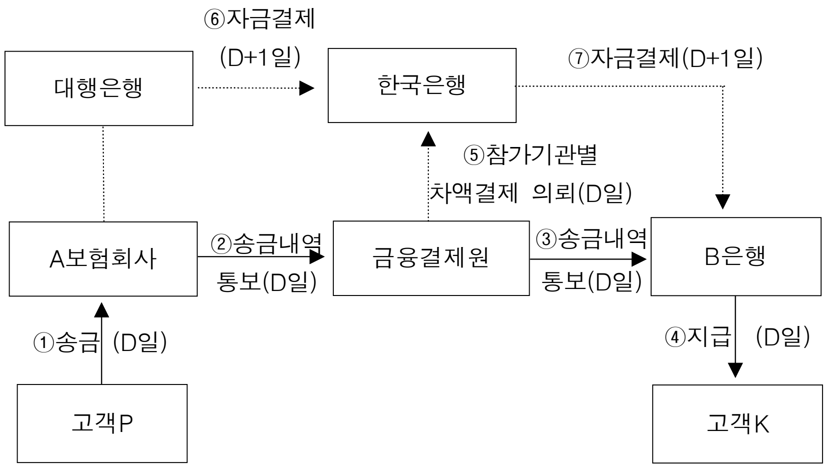

은행의 소액지급결제 참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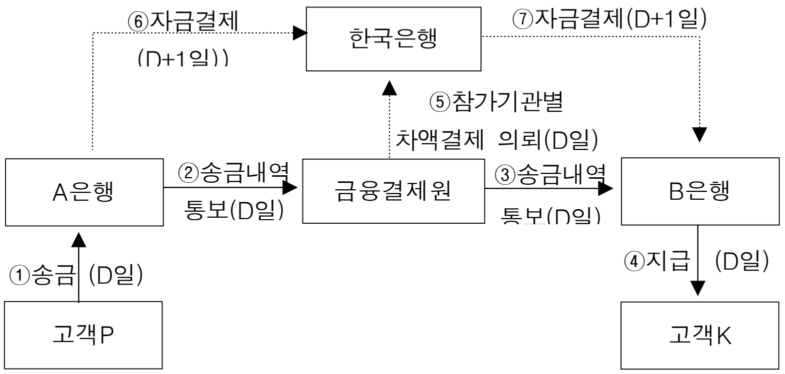

금융투자업의 참여 유형(보험산업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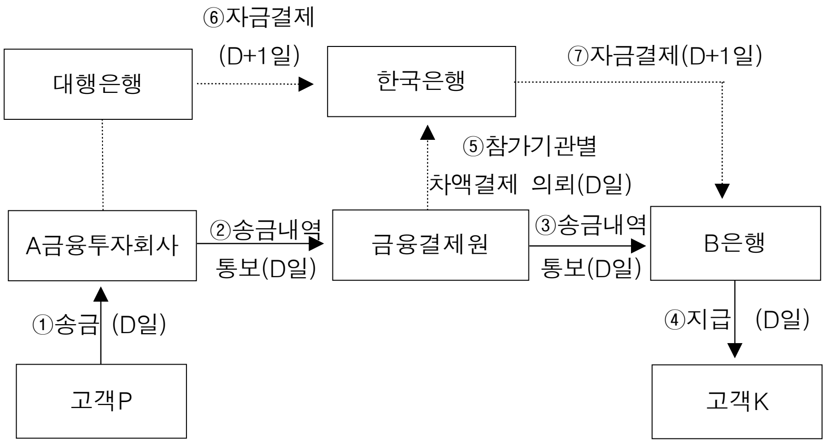

서민금융기관의 소액지급결제 참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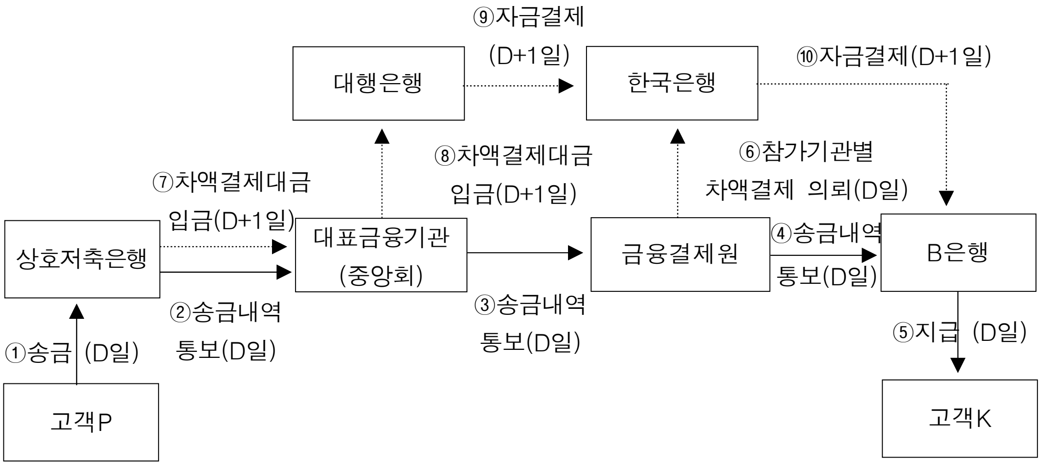

3. 해외 보험산업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사례

■ 제도적으로는 캐나다, EU 등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허용되는 추세**이나 개별 회사가 참여한 사례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음.

■ 캐나다 및 EU에서는 **지급결제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비은행기관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를 허용함.

가. 캐나다

□ 2001년 **지급결제법(The Canadian Payments Act) 개정**으로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진입규제가 철폐되면서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가 허용됨.

○ 생명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협동조합, 신탁회사, MMF 등 비은행금융기관과 소매업자 등에 지급결제협회(CPA: Canadian Payment Association)의 회원 자격을 부여함.

○ 보험회사는 **간접청산자(indirect clearer)**로서 직접청산자(direct clearer)를 통해 지급거래의 청산업무를 수행함.

- 증권회사의 경우 직접청산자로 참여가 가능했으나 2006년에 간접참가기관으로 전환됨.

○ 생명보험회사들은 CPA 회원으로서 **거치연금[3](deferred annuities)의 형태**로 지급결제용 유동성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은행과 유사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지급카드(payment card)의 발급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음.

---

3)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뒤 지급이 개시되는 연금을 의미함.

나. EU

□ EU는 EU단일지급결제시스템(SEPA: Single Euro Payment Area)의 추진과 함께 다양한 비은행기관에 지급서비스 기능을 부여하기로 함.

- ○ 2007년 4월 유럽 의회는 지급서비스 지침(Payment Service Directive)을 통해 보험을 포함한 비은행금융기관, 모바일 업체, 일반 소매기업 등에 비은행지급기관(payment institution)의 자격을 부여함.
- ○ 지급서비스기관은 **자금입출금, 송금, 각종 요금 납부** 등 광범위한 지급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지급결제용도로 한정하여 고객으로부터 맡겨진 자산을 **예금처럼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 EU회원국들은 동지침을 2009년 11월 1일까지 자국법에 반영해야 함.

□ EU지침은 비은행지급기관에 은행이 수행하는 형태의 예금업무를 금지하고 별도의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있음.

- ○ 지급서비스는 고객으로부터 지급결제용도로 수취한 자금에 대해서만 부여할 수 있으며 동 자산은 해당 기관의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함.
- ○ 지급결제용 자산 전체에 대해서 보험가입 또는 은행보증을 통해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관의 청산시에는 지급결제용 자산을 최우선 변제하여야 함.

다. EU와 캐나다의 비교

□ EU는 지급결제용 유동성을 고유자산과 분리하고 보증 등 안정장치를 요구함으로써 캐나다의 경우보다 엄격한 결제리스크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예금 업무에의 침해소지를 축소함.

○ 지급결제시스템에의 신규 참여 범위에 있어서는 EU가 모바일업체, 일반소매업체 등 비금융기관을 포함하고 있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캐나다보다 개방폭이 넓음.

○ 허용된 지급서비스의 종류에 있어서는 EU, 캐나다 모두가 은행에서 예금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상호 유사하다고 판단됨.

○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용 유동성에 있어서는 EU는 고유자산과의 분리와 원금의 보전 장치를 요구하는 반면, 캐나다는 고유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상호 큰 차이가 있음.

-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캐나다의 사례는 예금업무의 침해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5> 해외 보험산업 지급결제 참여유형의 특징

	캐나다	EU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비예금수취 기관	생명보험, 증권회사, MMMF(money market mutual fund) 등 비예금수취금융기관	비예금수취금융기관(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모바일업체, 일반소매업체 등 광범위
지급서비스 종류	은행의 예금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지급서비스	전자 이체, 출금, 입금, 요금 납부 등
보험산업 지급결제용 유동성	거치연금 (deferred annuities)	고유자산과 분리된 고객 자산 (은행, 보험회사의 보증요구)

4. 고객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계좌

■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특별계정을 활용할 경우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지급결제계좌를 설정할 수 있음.

■ 엄격한 고유영역 구분과 결제리스크 통제가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고려하여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을 외부 위탁**하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EU방식 적용시 우리나라 보험산업도 특별계정, 예금보험제도, 대행은행에의 순채무한도 담보 예치 등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모형을 만들 수 있음.

① 보험고객이 지급결제 용도로 맡긴 자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특별계정**으로 처리함.

- 지급결제용 자산을 고유자산과 분리함으로써 예금의 성격을 제거하고 보험리스크의 결제리스크 전이를 차단

② 해당 자금에 대해 **예금보험제도를 적용하여 원금 보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 5000만원 한도내에서는 전액 원금 보장 가능

③ 한국은행과의 차액결제를 수행하는 대행은행에 **일일 순채무한도(지급예정액 - 수신예정금액)를 100% 예치**함.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급결제리스크를 완전히 차단

□ EU기준보다 예금적 성격을 더욱 엄격하게 제거하고 결제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특별계정으로 분리된 지급결제용 자산을 전액 외부 위탁**할 수 있음.

○ 전액 위부 위탁된 지급결제용 자산은 고유자산도 아니고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과정에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금 업무의 침해 소지를 완전 제거할 수 있음.

- 운용에 따른 수익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므로 예금과 같이 예대마진이 존재할 수 없음.
- 위탁 받는 기관은 은행 또는 증권업의 고객예탁금을 관리하는 증권금융으로 할 수 있을 것임.

○ 대행은행에 대한 순채무한도의 담보 예치를 통해 유동성리스크와 시스템리스크를 제거함.

- 위탁기관이 대행은행일 경우 별도의 순채무한도 예치가 필요 없음.
- 위탁기관이 제3의 기관(은행 또는 증권금융)일 경우 해당 기관이 순채무한도의 담보를 대행은행에 예치함.

□ 본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EU + 안정성 강화 방식)을 금융투자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유형과 비교할 경우 **동등한 수준의 지급결제리스크 통제와 예금업무 침해 방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표 6> EU방식과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시 유형

	EU방식 적용시	EU + 안정성 강화 방식
지급결제용 유동성	특별계정 처리	특별계정 처리 자산운용 전액 외부 위탁
원금 보장	예금보험	예금보험
유동성 리스크 통제	대행은행에 순채무한도 100% 예치	1) 대행은행 자산운용 위탁시 : 추가 예치 필요 없음. 2) 제3의 기관에 자산운용 위탁시 : 위탁받은 기관이 대행은행에 순채무한도 100% 예치

5. 인터넷 뱅크와 지급결제업무

■ 최근 인터넷 뱅크의 도입 등 다른 지급결제 참여 경로가 논의되고 있으나 참가 자격요건 및 업무 제한 등에 있어서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 뱅크는 점포가 없을 뿐이며 사실상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고 있는 **in-house 방식의 지급결제기능보다 보다 편리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함.

○ 인터넷 뱅크에 지급결제용도로 맡겨진 자산은 기본적으로 예금자산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대출 및 예대마진 창출이 가능함.

○ 점포가 없는 소규모은행으로서 금융결제원 가입비 등에 있어서 비용 절감 가능성이 있음.

○ 인터넷 뱅크의 가상계좌를 활용한 CMA 방식 등 보험회사와 인터넷 뱅크 사이의 다양한 종합금융서비스 모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보험산업이 인터넷 뱅크 설립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에는 **다양한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높아 향후 논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유불리를 따질 필요가 있음.

○ 금산분리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 뱅크 설립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지분 소유한도를 실질적 지배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 전에는 사실상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인터넷 뱅크도 자본금, 금융결제원 가입비, 전산망 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in-house 지급결제 방식에 비해 저렴한 방식이 될지에 대해 현재 판단하기 어려움.

Ⅲ. 결　론

□ 보험회사가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수료 절감에 있다기보다는 **종합금융서비스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금융 겸업화시대에 생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지급결제수수료의 절감은 보험료 이체 계좌의 유치 및 해당 계좌에서의 서비스 창출 여부에 따라 가변적임.

○ 또한 전산인프라, 금융결제원 가입비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을 고려한다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보험회사 및 비예금금융기관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의 설정과 자산의 외부 위탁**을 통해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급결제시스템에의 전체적인 참여 유형은 비은행, 비예금수취기관이면서 주요 금융산업인 금융투자업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임.

- 따라서 ① **금융결제원 직접 참여, ② 대행은행을 통한 차액결제, ③ 비예금유동성 기반 서비스 방식일 것으로 판단됨.**

○ 보험산업의 지급결제용 **비예금유동성의 경우 EU와 같이 고유자산과 분리된 유동성 자금**을 설정하는 방식이 적합함.

- 거치연금을 대상으로 한 캐나다 방식은 예금업무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EU와 같이 고객이 임시로 맡긴 자산을 특별계정으로 분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특히, 고유영역 구분과 결제리스크 통제가 엄격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해당 자산의 운용을 외부 위탁하여 예금적 성격을 제거하고 결제리스크의 통제를 보다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산업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의 목적이 종합금융서비스체제 구축에 있는 만큼, **적어도 금융투자업 수준이상의 자유로운 지급결제서비스가 가능**해야 할 것임.

○ 캐나다, EU가 제도를 도입한 목적인 '지급결제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보험산업의 지급결제기능은 적어도 금융투자업 또는 서민금융기관 수준이 되어야 함.

○ 보험금 지급, 약관 대출금 지급, 유니버설계좌 출금 등 고객의 자금이 보험회사로부터 유출될 때 사용처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거치될 수 있는 계좌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함.

○ 또한 해당 계좌에 보험회사의 **고객이 임의로 자금을 맡기고** 자유로운 입출금 및 이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계정 및 자산 위탁 방식은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고유영역 구분과 결제리스크 통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인 것으로 판단됨.

CEO Report 2008 - 0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발 행 일	2008년 5월 일
발 행 인	나 동 민
발 행 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 쇄 소	(주)유성사
	대표전화 2268 - 0676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 (☏368-4411)로 하여 주십시오.